

5. 서울심리지원 3개권역 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

시설현황

○ 시설개요

시 설 명	소 재 지	현 수탁법인
서울심리지원 제1권역 센터	서울특별시 송파구 총민로6길 17	(사)아이코리아
서울심리지원 제2권역 센터	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44길 33	덕성여자대학교
서울심리지원 제3권역 센터	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176	(사)항공기소음

○ 인력구성 : 센터별 5명(비상근 센터장 외 4인)

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(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)
-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(사무의 위임 등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기준)
-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

○ 필요성

- 서울시민의 우울감 경험률(6.5%, 전국 중앙값 5.5%), 스트레스 인지율(27.2%, 전국 중앙값 25.2%)이 높아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
- 시민의 심리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

□ 주요내용

- 위탁기간: '22. 4. 1. ~ '25. 3. 31. ※ 최초위탁일: '18.4.1.
- 위탁사무
 - 개인별·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 및 교육
 -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구성 동료상담가 교육양성
 - 취약계층 대상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
 - 대시민 홍보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
- 서비스 내용
 - (대상자 발굴) 경제적·심리적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
 - (대상자 선별) 기초 심리평가 및 심층 개인상담 제공
 - (소집단 교육) 스트레스 관리 및 정서조절, 우울관리 등 교육 실시
 - (대집단 교육) 심리장애 예방과 마음건강 증진 관련 특강 실시
 - (특성화 사업) 자조모임 및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
 - (유관기관 연계) 정신건강복지센터, 자살예방센터, 의료기관, 마음상담소 등
- 소요예산(안) : 총 1,212백만원
 - 산출내역: 3개권역 센터 × 404백만원 = 1,212백만원
- 선정방법 : 수탁자 모집공고를 통한 재위탁

□ 향후계획

- 재위탁 공고 및 민간위탁 협약 체결 : '22. 2 ~ 3월